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57
----------	-------

발의연월일 : 2023. 12. 22.

발 의 자 : 김영식 · 김용판 · 배준영
지성호 · 박대수 · 金炳旭
홍석준 · 노용호 · 정희용
박성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
하한 경우 그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
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
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 ·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해당 특례의 적
용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
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 ----- ----- ----- ----- ----- --2025년 12월 31일----- ----- ----- ----- -----100분의 80-----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